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05호 2018. 4. 20.(금)

고 시

- 제2018 - 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 제2018 - 4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고시 2

공 고

- 제2018 - 38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5
- 제2018 - 387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8
- 제2018 - 388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7
- 제2018 - 389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3
- 제2018 - 390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7
- 제2018 - 391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1
- 제2018 - 392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5
- 제2018 - 396호 공시송달 공고69
- 제2018 - 401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72
- 제2018 - 423호 도시계획도로(소로2-27호, 향교~신우보람)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84
- 제2018 - 429호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89
- 제2018 - 43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94
- 제2018 - 446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창~서변마을회관)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98
- 제2018 - 447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02
- 제2018 - 448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05
- 제2018 - 460호 소재불명자 공시송달 공고110
- 제2018 - 461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112
- 제2018 - 462호 공시송달 공고113
- 제2018 - 475호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116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남해군수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공작물의 신축(테크로드 설치)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번지
6. 점용면적 : 82m²
7. 점용기간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18 - 4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 지정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5일

남 해 군 수

1. 붕괴위험지역 변경현황

구분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 및 변경 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		
당초	탑동 지구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1번지 일원	붕괴 위험	D	304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기존
변경	탑동 지구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1번지 외 12필지	붕괴 위험	D	1,833	붕괴위험지역 추가 지정 확대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신규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남해군 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남해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4.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 : 2018. 4. 5.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가. 추후 예산확보 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면정비 및 보강공사 시행

6.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3)

붙임 :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사 진 대 장



위치도



현황도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38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4-7번지의외 21필지

2. 출입기간 : 2018. 4. 5.~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용지조서 1부. 끝.

남 해 군 공 보

(6) 제 605 호

2018년 4월 20일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	리	본	지	대장	현재	총지적	편 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남해	남해	아산	산144	16	유	유	4,794	7	한국농어촌공사	국					
2	남해	남해	아산	산144	4	유	유	992	32	한국농어촌공사	국					
3	남해	남해	아산	산144	5	임	임	29,421	125	남해군	국					
										경상남도 진주시	전윤0					
4	남해	남해	아산	산144	6	도	도	397	355	북변동	김상0					
										북변동	황중0					
5	남해	남해	아산	산144	7	임	임	21,917	2,631	남해군	국					
										남해읍	하재0					
6	남해	남해	아산	산144	2	유	유	1,488	177	한국농어촌공사	국					
7	남해	남해	아산	산144	15	유	유	165	144	한국농어촌공사	국					
8	남해	남해	아산	산144	8	도	도	1,983	1,163	남해읍	조용0외 42인					
9	남해	남해	아산	1086	1	전	전	63	1	국	하순0					
10	남해	남해	아산	산144	13	임	임	5,900	848	남해읍	이태0					
										남해읍	황창0					
11	남해	남해	아산	산144	3	임	임	166	125	남해읍	하순0					
12	남해	남해	아산	산144	12	임	임	5,901	1,673	남해읍	이태0					
										남해읍	황창0					
13	남해	남해	아산	1083	1	장	장	3,868	5	남해읍	남해섬쪽마을					
14	남해	남해	아산	산144	11	임	임	5,901	1,306	남해군	국					
15	남해	남해	아산	1417		천	천	51,709	487	국(기획재정부)	국					
16	남해	남해	아산	1078	2	도	도	7	7	남해읍	하재0					
17	남해	남해	아산	1078	1	답	답	1,643	72	부산 해운대구	이위0					
18	남해	남해	아산	1077	1	답	답	651	1	부산 해운대구	이위0					
19	남해	남해	아산	1076	3	도	도	10	10	남해군	국					
20	남해	남해	아산	1073	2	도	도	7	7	남해군	국					
21	남해	남해	아산	1072	1	답	답	629	1	남해읍	하진0					
22	남해	남해	아산	산144	10	임	임	5,901	493	경기도 광주시	김해0					
계								143,513	9,670							

남해군 공고 제2018 - 387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 관련 규정 신설로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 규정함(안 제1조)
- 나.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세무조사기간 연기신청 등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처리기한(안 제14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4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7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남해군 본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군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지방세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세 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3.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감사 및 도 감사 또는 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 고충민원이 있는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반복 제기된 경우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1.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예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

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처리기한) ①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18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15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등)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388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 시행) 됨에 따라 제정되는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고충민원의 신청(안 제1조~안 제2조)
- 나. 고충민원 처리절차, 처리 결과에 통지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6조)
- 다.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1조)
- 라.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처리절차(안 제12조 ~제14조)
- 마. 각종대장 및 신청서 서식 등을 규정(별지 1호~별지28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4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7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연장결정에 따른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조사의 착수 보류 또는 해당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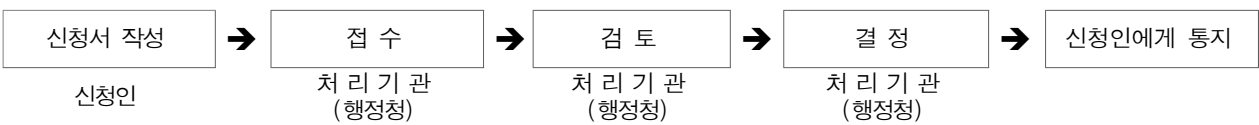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남 해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 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남 해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1) 세무부서의 장]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2) 납세자]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연장신청 사유	※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 연장신청 사유를 기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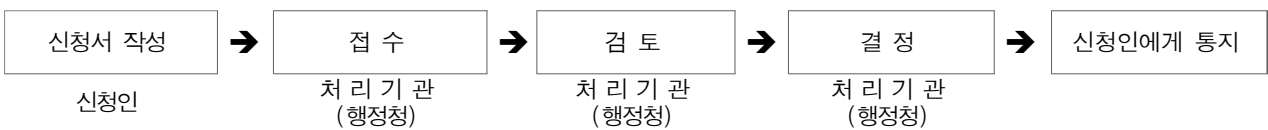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8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 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 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	--------	--------	--------	--------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연 번	접수일	납세자(대리인)			요 청 사 유	처 리 여 부			비 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처리 결과	결과 통지일	처리 기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번호(시행일)	일련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남해군 공고 제2018 - 389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공포, 2018. 1. 1.시행) 됨에 따라 감면 기한, 세액공제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기한연장 : 2018년 12월31까지 연장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안 제11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055-860-3173, 팩스 055-860-3705, 이메일
choi176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 를 “자동이체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 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390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개정(안 제2조제2항)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개정(안 제8조제2항)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개정(안 제9조제3항)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055-860-3173, 팩스 055-860-3705, 이메일 choi176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391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세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8.1.1. 시행)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 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16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055-860-3173, 팩스 055-860-3705, 이메일 choi176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세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조례” 를 “남해군 군세 조례” 로 한다.

제16조 중 “10만원” 을 “2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재산세(주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392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 나.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일 연장 : 7일 → 15일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055-860-3173, 팩스 055-860-3705, 이메일 choi176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를 “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6조”를 “제140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조사개시 7일 전에”를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로 하고,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7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상남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9조”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396호

공시송달 공고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1) 사업 명칭 :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4) 사업 시행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 144-7번지 일원
 - 나. 사업면적 : 9,670m²

2.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 1) 의견 제출기간 : 2018. 4. 5. ~ 4. 19. (14일간)
- 2) 의견 제출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055-860-3295)

3.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2인			
1	남해군 남해읍	1078-1	답	1643	부산 해운대구 우동 1로 85번길	이위0			
2		1077-1	답	651					
3		산144-7	도	397	진주시 신안로1269번길	황영0			

의 건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건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 해 군 수 귀 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401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남해군 공고 제2017-167(2017.02.16)호 관련,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0일

남 해 군 수

-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1)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 2) 규 모
 -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변경
 - 당초입안(생산관리지역 A = 38,900㎡ → 계획관리지역 A = 34,185㎡)
 - (농림지역 A = 91,915㎡ → 계획관리지역 A = 33,604㎡)
 - ※개발에 수반되는 지역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용도지구 A = 140,585㎡(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A = 31,738㎡, 관광휴양형 A = 140,585㎡)
 - 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 · 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9,488,905.7	-	579,488,905.7	100.00	
육지부	357,677,341.7	-	357,677,341.7	61.72	
도시지역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리지역	136,536,274.7	증) 33,604.0	136,569,87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59,425.0	감) 34,185.0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5,940,797.6	증) 67,789.0	36,008,586.6	6.21	
농림지역	154,011,126.0	감) 33,604.0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부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 기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7-21호(2017.7.3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기준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계				109,297		
계획관리지역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3,604	100% ~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형(주거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계획관리지역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4,185	100% ~ 200%	
계획관리지역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일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1,508	100% ~ 200%	

② 용도지구 결정 조서

1.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140,585	-	

2. 개발진흥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창선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개발진흥지구 신설 - A = 140,585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형(주거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함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172,323	172,323		
신설	-	창선 지구	주거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	증)31,738	31,738		
신설	-	창선 지구	관 광 휴양형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	증)140,585	140,585		

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m ²)	결정사유
합계			172,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인의 화두로 떠오른 healing과 독특한 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 힐링 테마빌리지 조성
신설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2 일원	31,738	
신설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86-4 일원	140,585	

남 해 군 공 보

(76) 제 605 호

2018년 4월 20일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31,738	31,738	100.0	
주거용지	—	증)7,297	7,297	23.0	
녹지용지	—	증)13,066	13,066	41.2	
소공원	—	증)200	200	0.6	
조성녹지	—	증)12,006	12,006	37.9	
보행자전용도로	—	증)860	860	2.7	
공공시설용지	—	증)11,375	11,375	35.8	
커뮤니티센터	—	증)4,608	4,608	14.5	
공공하수처리시설	—	증)324	324	1.0	
도로	—	증)6,443	6,443	20.3	

-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분	면적(m ²)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140,585	140,585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	증)50,292	50,292	35.8	
녹지용지	—	증)83,738	83,738	59.5	
조성녹지	—	증)20,712	20,712	14.7	
원지형보전녹지	—	증)63,026	63,026	44.8	
공공시설용지	—	증)6,555	6,555	4.7	
주차장	—	증)6,183	6,183	4.4	
도로	—	증)372	372	0.3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7	754	6,815	3	610	5,899	4	144	916	
중로	1	103	1,817	1	103	1,817	-	-	-	
소로	6	651	4,998	2	507	4,082	4	144	916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A	16	집산 도로	103	창선면 진동리 641-1도	창선면 진동리 653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205	창선면 진동리 653전	창선면 진동리 664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B	8	국지 도로	302	소로 2-A	창선면 진동리 675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A	6.5	국지 도로	48	소로 2-A	창선면 진동리 640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B	6	국지 도로	26	소로 2-B	창선면 진동리 643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C	6	국지 도로	27	소로 2-A	소로 2-B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D	4	국지 도로	43	소로 2-B	창선면 진동리 674전	일반 도로			

다)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류 A호선	• 신설 • B=16m, L=103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2류 A호선	• 신설 • B=8m, L=20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2류 B호선	• 신설 • B=8m, L=302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3류 A호선	• 신설 • B=6.5m, L=531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3류 B호선	• 신설 • B=6m, L=26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3류 C호선	• 신설 • B=6m, L=27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	소로3류 D호선	• 신설 • B=4m, L=43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

남 해 군 공 보

(78) 제 605 호

2018년 4월 20일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창선면 진동리 637전	-	증)6,183	6,183		

나)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창선면 진동리 637전 • 면적: 6,18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차장을 기반시설로 결정

3) 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소공원	창선면 진동리 652전	-	증)200	200		

나)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창선면 진동리 652전 • 면적 : 20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로 설치

4) 하수도

가)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창선면 진동리 674전	-	증)324	324		

나) 하수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하수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위치 : 창선면 진동리 674전 • 면적 : 32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구역내 발생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하수도)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1	540	진동리 643 전	540	주거용지
2	2	2,469	진동리 642 전	2,469	
3	3	1,806	진동리 651 전	1,806	
4	4	537	진동리 667 전	537	
5	5	1,347	진동리 668 전	1,347	
6	6	598	진동리 664 전	598	
7	7	4,608	진동리 678 전	4,608	커뮤니티센터
8	8	324	진동리 674 전	324	공공하수처리시설
9	9	200	진동리 652 전	200	소공원
10	10	3,629	진동리 산203 입	3,629	조성녹지
11	11	1,630	진동리 653 전	1,630	
12	12	442	진동리 652 전	442	
13	13	364	진동리 667 전	364	
14	14	333	진동리 669 전	333	
15	15	5,608	진동리 산200 입	5,608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	A	5,012	진동리 680 전	5,012	관광휴양시설
B	B	45,280	진동리 687 전	45,280	관광휴양시설 (특별계획구역)
C	C	6,183	진동리 637 전	6,183	주차장
D	D	10,787	진동리 산197-6 입	10,787	조성녹지
E	E	9,925	진동리 산197-34 입	9,925	조성녹지
F	F	63,026	진동리 산197-17 입	63,026	원지형보전녹지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2 3 4 5 6	1 2 3 4 5 6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및 나목. 단,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며 편의점은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 8미터 이하	
		배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1장 제3조 참조)	
		형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1장 제4조 참조)	
		색채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1장 제5조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1장 제3조 참조)	
		7	7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 18미터 이하			
배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형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장 제3조 참조)			
색채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Ⅱ편. 제2장 제4조 참조)			

2)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관광휴양시설 A	A	용 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관광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련시설 - 제6호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 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 관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시설 - 나목 관광농원사업 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 12미터 이하			
		배 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형 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Ⅲ편. 제1장 제3조 참조)			
		색 체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주차장 C	C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해당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높 이	2층 이하 / 7미터 이하					
배 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형 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Ⅳ편. 제1장 제3조 참조)					
색 체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남 해 군 공 보

(82) 제 605 호

2018년 4월 20일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남해 창선지구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창선면 진동리 산197-6번지 일원	-	증)45,280	45,280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남해 창선지구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창선면 진동리 산197-6번지 일원	45,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유치와 협의를 통해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하기 위함

2)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조서

구분		개발계획	비고
용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위락시설 등의 시설인 경우로,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밀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높이	4층 이하 / 12미터 이하	
배치		입지의 특성 및 용도 등의 개발의도에 맞게 배치	
형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형태 추구	
색채		통일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재료와 색조 사용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3m 이상의 보행공간 조성 - 피로티 구조일 경우 유효높이 4m 이상 - 24시간 상시개방구조로 설치 	

※ 별표1 - 특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다음의 건축물

1. 제1호 단독주택
2. 제2호 공동주택
3. 제6호 종교시설
4.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제17호의 공장
9.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4. 제25호의 발전시설
15.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제28호의 장례식장

남해군 공고 제2018 - 423호

도시계획도로(소로2-27호, 향교~신우보람)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도로(소로2-27호, 향교~신우보람)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4)에 비치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27호, 향교~신우보람) 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 향교~신우보람) 개설공사	소로 2-27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154m	8m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남 해 군 공 보

(86) 제 605 호

2018년 4월 20일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북변리	572-2	대	91	91		남해군	-	
2	남해읍 북변리	572-4	대	20	20		남해군	-	
3	남해읍 북변리	573-16	중	46	46		남해군	-	
4	남해읍 북변리	569-4	대	40	40	남해읍 북변리	김*언	-	
5	남해읍 북변리	573-18	대	152	152		남해군	-	
6	남해읍 북변리	573-7	대	152	152		남해군	-	
7	남해읍 북변리	573-17	대	93	93		남해군	-	
8	남해읍 북변리	573-6	대	63	63		남해군	-	
9	남해읍 북변리	622-12	도	118	3		국(기획재정부)	-	
10	남해읍 북변리	622-13	대	18	18		국(기획재정부)	-	
11	남해읍 북변리	587-1	대	66	66		남해군	-	
12	남해읍 북변리	585-34	대	41	41		남해군	-	
13	남해읍 북변리	585-33	대	58	58		남해군	-	
14	남해읍 북변리	573-13	대	6	6		남해군	-	
15	남해읍 북변리	573-5	대	7	7	남해읍 북변리	정*주	-	
16	남해읍 북변리	574-2	대	23	23		남해군	-	
17	남해읍 북변리	574	대	70	70		남해군	-	
18	남해읍 북변리	622-38	대	10	10		국(기획재정부)	-	
19	남해읍 북변리	622-14	대	13	13		국(기획재정부)	-	
20	남해읍 북변리	585-21	대	42	42		남해군	-	
21	남해읍 북변리	585-19	대	208	208		남해군	-	
22	남해읍 북변리	584-2	대	91	91		남해군	-	
23	남해읍 북변리	584-5	대	36	36		남해군	-	
24	남해읍 북변리	584-8	대	18	18		남해군	-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25	남해읍 북변리	585-18	전	95	95		남해군	-	
26	남해읍 북변리	585-32	전	143	143		남해군	-	
27	남해읍 북변리	585-31	대	140	140		남해군	-	
28	남해읍 북변리	585-30	대	80	80		남해군	-	
29	남해읍 북변리	585-15	대	60	60		남해군	-	
30	남해읍 북변리	585-29	대	8	8		남해군	-	
31	남해읍 북변리	585-14	대	116	116		남해군	-	
32	남해읍 북변리	622	도	400	115		국(기획재정부)	-	
33	남해읍 북변리	585-24	도	126	16		남해군	-	
34	남해읍 아산리	1418	도	681	98		국(국토교통부)	-	
35	남해읍 아산리	189-2	도	647	259		남해군	-	
36	남해읍 아산리	189-12	대	7	7	서울 성동구 행당동	박*철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연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73-7	주택1	블록슬라브	㎡	24		남해군	
		주택2	블록기와	㎡	38		남해군	
		주택3	블록스레트	㎡	94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스레트	㎡	38		남해군	
		물탱크		EA	5		남해군	
		수 목		주	5		남해군	
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73-6	주택1	블록슬라브	㎡	14		남해군	
		주택2	블록스레트	㎡	92		남해군	
3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7-1	주택1	블록스레트	㎡	58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스레트	㎡	35		남해군	
		물탱크		EA	2		남해군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21	주택1	블록슬라브	m ²	99		남해군	
		창고	블록스퀘트	m ²	11		남해군	
		물탱크		EA	2		남해군	
		수 목		주	1		남해군	
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33	주택1	블록스퀘트	m ²	33		남해군	
6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19	주택1	블록합석 스레트	m ²	155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스레트	m ²	80		남해군	
		물탱크		EA	2		남해군	
7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4-8	주택1	블록합석 스레트	m ²	66		남해군	
		창고	블록슬라브	m ²	15		남해군	
		물탱크		EA	1		남해군	
8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31	주택1	블록합석 스레트, 형글	m ²	101		남해군	
		수 목		주	4		남해군	
9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30	창고	블록스퀘트	m ²	5		남해군	
		수목		주	93		남해군	
10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5-29	창고	블록스퀘트	m ²	3		남해군	
1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89-12	수목		주	36	서울 성동구 행당동	박*철	

남해군 공고 제2018 - 429호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일원
- 다. 공사내용
 - 소하천정비 L=506m, B=4~6m
 - 전석쌓기 : L=924.2m, H=2~3.2m
 - 낙차공 6개소, 취입보 1개소, 교량 1개소
- 라.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1055-4번지 외 2필지 / 568㎡
- 나. 지장물건 : 해당없음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8. 4. 12. ~ 2018. 4. 27.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8년 5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대상	현재	총지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1	남해	이동	난음	1055-1	1055-4	답	답	1,160	204	경남 남해군 실천면 실천로	박*순					
2	남해	이동	난음	1054	1054-1	답	답	740	153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난음로	최*심					
3	남해	이동	난음	1053	1053-1	답	답	443	21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최*찬					
계								2,343	568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p>○ 대상 토지 또는 물건:</p>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등모소하천 호안정비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 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18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433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남 해 군 수

1. 개요

1) 지정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일원의 감암지구는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여 종합적인 재해방지 대책 수립 및 재해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지정내용

지구명	사업예정지(위치)	지정 내용			지정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m ²)		
감암	설천면 노량리 일원	해일위험	나	11,000	해일로 인한 피해우려	

2. 행정예고 기간 : 2018. 4. 12. ~ 5. 3. (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8. 4. 12. ~ 5. 3. (20일간)

4.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지구지정(변경)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감암지구	2019년 이후	8,931	방파제 및 물양장 승고, 자동배수문 설치	

※ 사업시기는 현장여건 및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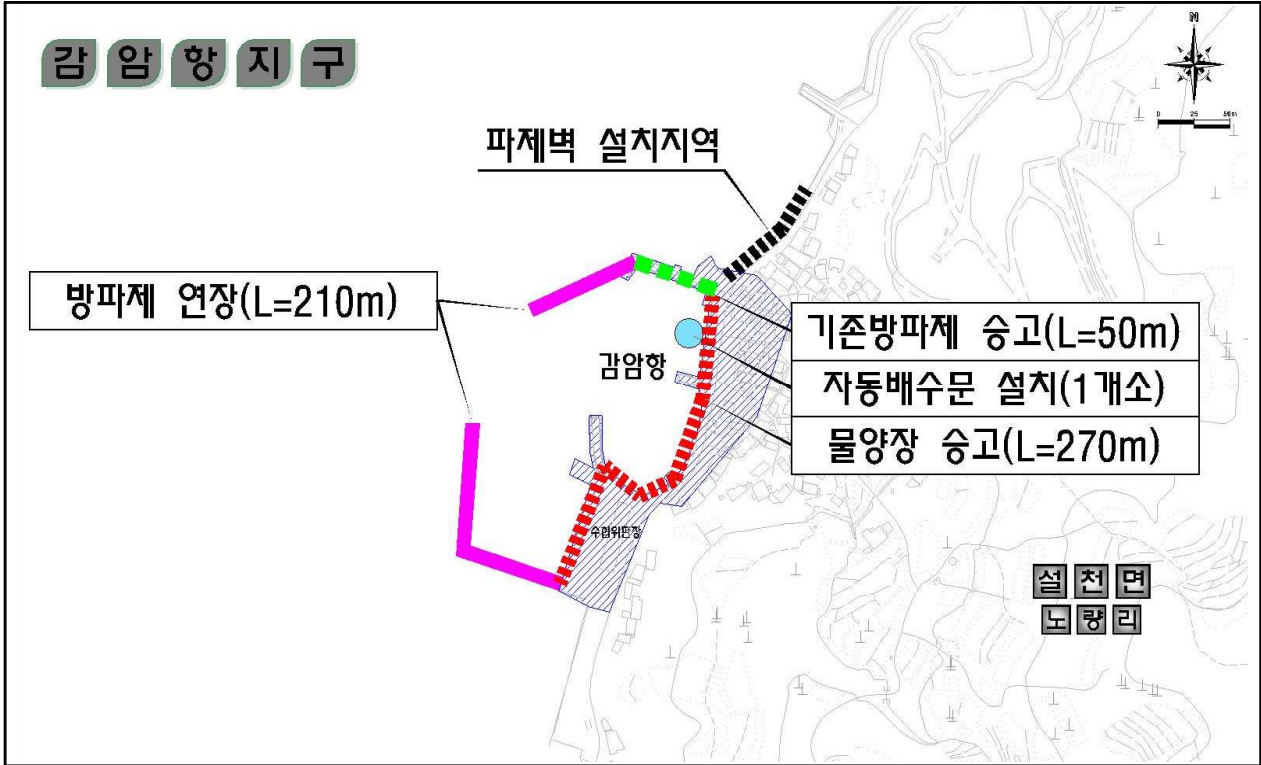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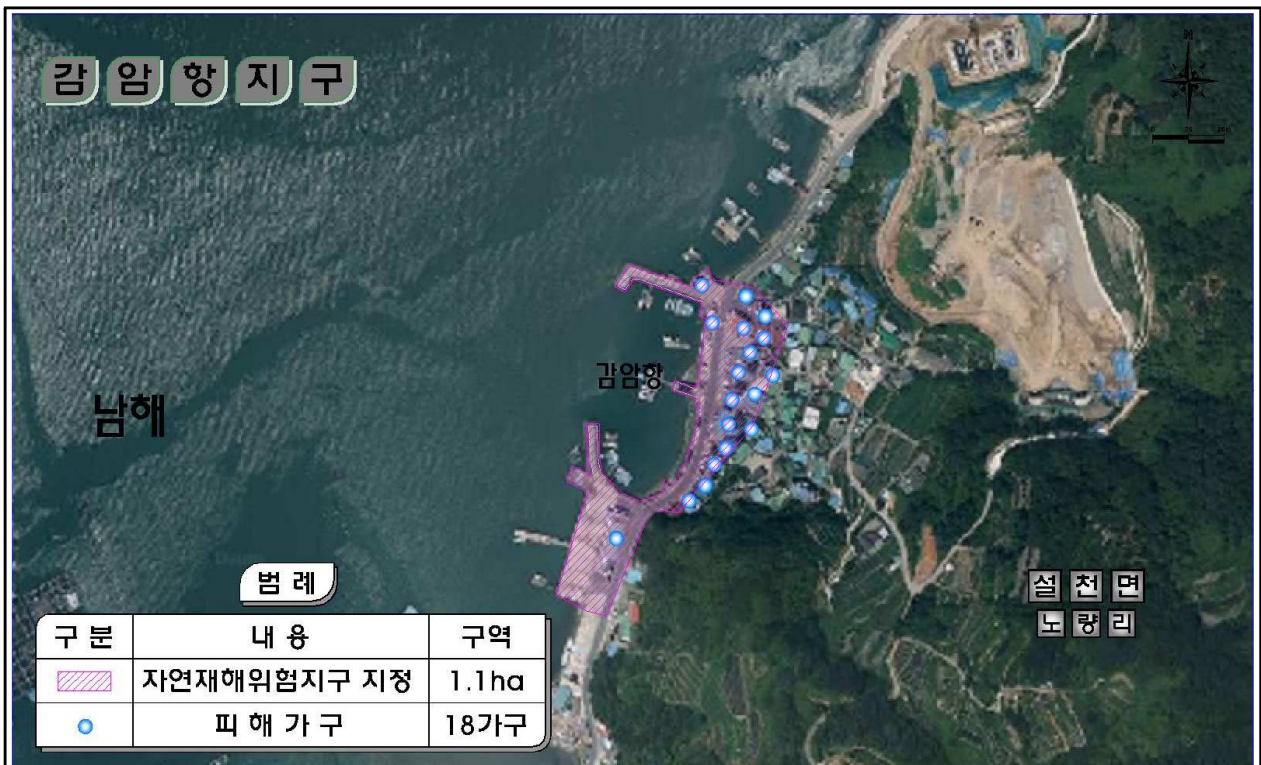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다. 기타 필요사항 등
-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전 화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055-860-3292~3295),
 - 팩 스 : 055-860-3727
-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지형도면 및 현황사진 1부.
 2. 의견서 1부.

□ 지형도면(감암지구)



□ 현황사진(감암지구)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 해 군 수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446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4)에 비치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37호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전체:237 급회: 71	8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6	대	202	4	아산리 311-6	안*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변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변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변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변리	311-10	대	8	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조*형	-	
11	남해읍 서변리	324-1	전	7	7	아산리 338	김*금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28	아산리 338	김*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11-6	대	194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조*형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6	담장	블록	m ²	24	아산리 311-6	안*기	
		동백나무	30년생	주	4	아산리 311-6	안*기	
		목련나무	20년생	주	2	아산리 311-6	안*기	
2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11-6	주택	블록합석	m ²	9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조*형	
		철재대문	철재	식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1	조*형	
3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록합석	m ²	1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56길	이*봉	
		물탱크	FRP	EA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56길	이*봉	
		철재대문	철재	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56길	이*봉	

남해군 공고 제2018 - 447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4)에 비치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39호, 한빛그린~남해여중) 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9호, 한빛그린~여중) 개설공사	소로 2-39호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104.5m	8m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서변리	329-8	전	292	9		남해군	-	
2	남해읍 서변리	329-5	대	59	22		남해군	-	
3	남해읍 서변리	330-1	전	283	232		남해군	-	
4	남해읍 서변리	331-1	전	200	200		남해군	-	
5	남해읍 서변리	320-3	전	157	157		남해군	-	
6	남해읍 서변리	319-10	전	1	1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임*숙 외 1인	-	
7	남해읍 서변리	319-8	전	202	202	남해읍 서변리	정*순	-	
8	남해읍 서변리	317-6	도	833	22		남해군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위 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9-5	담장	블록	㎡	20		남해군	-
		창고	조립식	㎡	6		남해군	-
	서변리 330-1	유자나무	15년생	주	12		남해군	-
	서변리 331-1	유자나무	15년생	주	12		남해군	-
	서변리 319-8	유자나무	15년생	주	12	남해읍 서변리	정*순	-

남해군 공고 제2018 - 448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4)에 비치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공사명	노선번호	위치	연장	폭	비고
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노인복지관~운동장) 개설공사	중로 3-1호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194m	12m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 소	성 명		
1	남해읍 아산리	355-2	도	5,248	117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09-7	답	379	379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414-12	답	40	40		남해군	-	
4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63		국(국토교통부)	-	
5	남해읍 아산리	419-8	답	27	27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19-11	대	92	92	남해읍 서변리	이*아	-	
7	남해읍 아산리	419-9	대	11	11		남해군	-	
8	남해읍 아산리	419-13	대	167	167		남해군	-	
9	남해읍 아산리	419-12	대	20	20	남해읍 아산리	안*기	-	
10	남해읍 아산리	419-10	대	129	12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11	남해읍 아산리	419-3	도	10	4		남해군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35	남해읍 아산리	김*금	-	
13	남해읍 서변리	324-6	대	227	227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22-14	전	209	209		남해군	-	
15	남해읍 서변리	326-1	전	269	269		남해군	-	
16	남해읍 서변리	327-2	전	243	243		남해군	-	
17	남해읍 서변리	329-6	대	2	2		남해군	-	
18	남해읍 서변리	329-7	대	10	10		남해군	-	
19	남해읍 서변리	329-8	전	292	283		남해군	-	
20	남해읍 서변리	329-3	전	41	10		남해군	-	
21	남해읍 서변리	329-5	대	59	37		남해군	-	
22	남해읍 서변리	328	전	109	25	남해읍 서변리	이*진	-	
23	남해읍 서변리	328-2	전	174	165	남해읍 서변리	이*진	-	
24	남해읍 서변리	330-1	전	283	51		남해군	-	

○지장물조사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1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09-7	대문	블록슬라브	m ²	6		남해군	-
		담장	블록	m ²	84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비닐하우스		식	1		남해군	-
		동백나무	30년생	주	4		남해군	-
		목련나무	20년생	주	2		남해군	-
		사철나무	20년생	주	4		남해군	-
2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5, 419-11	주택1	블록슬라브	m ²	105	남해읍 서변리	이*아	-
		주택2	블록슬라브	m ²	8	남해읍 서변리	이*아	-
		창고	블록슬라브	m ²	7	남해읍 서변리	이*아	-
		담장	블록	m ²	48	남해읍 서변리	이*아	-
		물탱크	FRP	EA	1	남해읍 서변리	이*아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읍 서변리	이*아	-
		마당콘크리트		m ²	22	남해읍 서변리	이*아	-
3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6, 419-12	담장	블록	m ²	30	남해읍 아산리	안*기	-
		비닐하우스		식	1	남해읍 아산리	안*기	-
		동백나무	30년생	주	4	남해읍 아산리	안*기	-
		목련나무	20년생	주	1	남해읍 아산리	안*기	-
		사철나무	20년생	주	4	남해읍 아산리	안*기	-
		감나무	20년생	주	2	남해읍 아산리	안*기	-
4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9-10, 419-4	주택	블록슬라브	m ²	108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대문	블록슬라브	m ²	6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창고	블록스레트	m ²	7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창고	블록스레트	m ²	1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물탱크	FRP	EA	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철재대문	철재	식	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담장	블록	m ²	6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사철나무	20년생	주	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감나무	20년생	주	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강*희	-
5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4-6	담장	블록	m ²	24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일련 번호	위치	대 상 지 장 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물건의 종류	구조, 년생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6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2-13, 322-14	주택	블록슬라브	m ²	160		남해군	-
		물탱크	FRP	EA	2		남해군	-
		창고	조립식	m ²	11		남해군	-
		마당콘크리트		m ²	17		남해군	-
		마당보도블럭		m ²	10		남해군	-
		담장	블록	m ²	10		남해군	-
7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9-2, 329-7, 329-8	주택	블록슬라브	m ²	100		남해군	-
		담장	블록	m ²	36		남해군	-
		물탱크	FRP	EA	2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마당콘크리트		m ²	17		남해군	-
8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329-5	담장	블록	m ²	40		남해군	-
		철재대문	철재	식	1		남해군	-
		창고	조립식	m ²	10		남해군	-
		사철나무	20년생	주	5		남해군	-
		등근소나무	30년생	주	2		남해군	-

남해군 공고 제2018 - 460호

소재불명자 공시송달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의 대상자들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농어촌도로(삼동면211호) 개설공사
- 3. 사업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일원
- 4.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주소·거소 등 불명으로 인함
- 5. 협의사항
 - 가. 협의기관 및 방법 : 정당한 소유자는 등기부의 소유권이외 권리(을구) 말소 후 남해군청(건설교통과)에 손실보상금 청구서 제출
 - 나.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시에는 청구에 의거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2018. 4. 30.(월)까지 남해군청(건설교통과)
 -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도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로 문의

6. 공고기간 : 2018. 4. 16. ~ 4. 30. (14일간)

7. 대상자 및 토지 등의 표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면 적	편 입 면 적	소유자		보 상 액 (원)	비 고
						성명	주소		
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562-10	대	60	4	박*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478,000	
2	"	562-11	대	60	8	박*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956,000	
3	"	622-7	도로	38	38	우*성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142,000	
4	"	631-18	전	437	238	김*환	등)남해군삼동면물건리 현)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1,301,000	
5	"	628-22	도로	180	180	신*균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9,900,000	
6	"	648-1	답	1200	16	최*식	등) 서울 노원구 중계동	664,000	
8	"	646-2	답	327	327	이*찬	부산 북구 시랑로	40,184,660	
8	"	646-2	답	"	"	이*길	등)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현)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740,670	

남해군 공고 제2018 - 461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해군 남면 평산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1. 사업명칭 : 남면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470필/131,335.2㎡
4. 지적확정조서 :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열람
5. 공람기간 : 2018. 4. 17 ~ 5. 1(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공람장소 :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1)

남해군 공고 제2018 - 462호

공시송달 공고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토지에 대한 출입사항을 알리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1) 사업 명칭 :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2) 사업 목적 :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경상남도 남해군수
 - 나.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 4) 사업 시행 위치 및 규모
 - 가.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 144-7번지 일원
 - 나. 사업면적 : 9,670㎡

2.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 1) 의견 제출기간 : 2018. 4. 17. ~ 5. 1. (14일간)
- 2) 의견 제출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055-860-3295)

3.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현황				비고
					소유자		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2인			
1	남해군 남해읍	1078-1	답	1643	부산 해운대구 우동 1로 85번길	이위0			
2		1077-1	답	651					
3		산144-7	도	397	진주시 신안로1269번길	황영0			

의 건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건

4.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 해 군 수 귀 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475호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8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급경사지 정비 1식(L=75.0m, H=7.0m)

1) 토 공

- 흙깎기(토사) : 1772m³ ○ 흙깎기(풍화암) : 71m³
- 터파기(토사) : 309m³ ○ 터파기(풍화암) : 28m³ ○ 터파기(연암) : 3m³
- 되메우기(다짐) : 28m³ ○ 벌개제근 : 724m³ ○ 기존구조물깨기 1식

2) 배 수 공

- 배수관로(∅600mm) : 27.5m
- U형측구(500x500) : 32m ○ U형측구(500x600) : 32m
- 옹벽측구(0.5x0.5m) : 69m

3) 구조물공

- 합벽식옹벽(H=4.0~7.0m) : 75m ○ 석축쌓기(H=1.5~2.0m) : 73m
- 조경석쌓기(H=0.7~3.6m) : 50.6m

4)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T=20cm) : 4735㎡

5) 부 대 공

- 가설사무소 1식 ○ 중기운반 1식
- 자재운반 1식 ○ 기타 부대시설 1식

라.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6-2번지 외 9필지 / 2,766㎡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8. 4. 18. ~ 2018. 5. 2.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8년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협의(계약체결)⇒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대상	현재	총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내용	
1	남해	고현	남치	156-2	전필	대	대	8	8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박남길				
2	남해	고현	남치	156-1	전필	도	도	76	76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	박남길				
3	남해	고현	남치	157	전필	대	대	114	11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박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창원지사	압류	
4	남해	고현	남치	158-1	전필	도	도	9	9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조재준				
5	남해	고현	남치	166	166-4	전	전	504	6	남해군 고현면 남치로	박한철				
6	남해	고현	남치	158	전필	대	대	249	249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조재준				
7	남해	고현	남치	167	167-1	잡	잡	172	14	부산광역시강서구	조정인				
8	남해	고현	남치	산123	산123-4	임	임	2,587	35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박성철				
9	남해	고현	남치	산123	산123-5	임	임	2,587	1,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박성철				
10	남해	고현	남치	산122	산122-1	임	임	1,091	196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박지분				
계								7,397	2,766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 대상 토지 또는 물건: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북남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 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 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18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